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98

2021. 5.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30.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29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5.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26. ~ 2021. 4. 1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현행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제3장(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위탁운영 등)제4항의 개정사항은 현행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였던 사항을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 및 현행 조례[2] 와의 형평을 고려한 사항임. 안 부칙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현행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개정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현황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제4장(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0조(위탁기간 등)제4항의 개정사항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02.28.>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유 및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시 장점은 무엇인지

○ 답 변 : 사회복지시설이나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형평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도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면 운영기관의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일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임

○ 질 의 :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답 변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도 적용되어 5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한 차례에 한하여 5년간 재위탁을 할 수 있음

○ 질 의 :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 변 : 매년 회계사와 공무원이 수탁기관의 회계분야 및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실적 등을 지도점검 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8

제출년월일 : 2021. 4. 30.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26. ~ 2021. 4. 1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6항 중 “법 시행령 제25조의6”을 “영 제25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하며, 한 차례만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기능) 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거쳐 한 차례만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지도와 감독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	⑥ ---------- 영 제25조의6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 없음

3. 미첨부 사유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위탁체의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보육지원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박지병(02-3423-5823)